제1장 총 칙

- 제1조 [목적] KBO 규약은 한국야구위원회(이하 "KBO"라 한다)의 정관에 따라 KBO가 주관하는 모든 리그(KBO 리그와 KBO 퓨처 스리그를 말하며, 이하 "리그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[권리와 의무] KBO의 회원(이하 "회원"이라 한다), 회원 소속의 임직원·감독·코치·선수, 심판위원, 기록위원 등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(이하 총칭하여 "리그 관계자"라 한다)은 KBO 규약이 보호하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또한 KBO 규약과 이에 부속하는 제반 규정 및 KBO 규약에 따른 총재의 결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.

제2장 총 재

제3조 [직무]

- ① 총재는 KBO를 대표하고 이를 관리 및 통할한다.
- ② 총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재 산하에 특별위원 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총재는 리그를 관리하고 KBO로 하여금 이를 주최하게 한다. [1991,2,12 개정]

제4조 [지시, 재정, 조사 및 재결]

- ①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리그 관계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.
- ② 총재는 리그 관계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사정을 청취하여 중재할 수 있는 재정 권한을 가진다. 재정 절차는 제16장에서 정 한 바에 따른다.
- ③ 총재는 리그 관계자의 유해행위 기타 KBO 규약 위반사항 조사